

提案番號	第 163 號
議決年月日	2000. . . (第 回)

'99歲入歲出決算承認の件

提出者	瑞山市長
提出年月日	2000. 6. →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년월일 : 2000. 6. 3.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 결산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년도의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업무에 반영·개선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능률성을 제고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골자

- '99회계년도 결산현황(별첨)

첨부서류

-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결산검사 의견서
-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순 서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 결 산 검 사 개 요
- '99 세 입 · 세 출 결 산 현 황
- '99 결 산 검 사 결 과 분 석
- 검 사 결 과 지 적 사 항

결산검사의견서

서산시장 귀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서산시의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199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서산시 일반회계, 13개의 서산시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 단체 회계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199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회계 년도의 서산시 일반회계와 13개의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별첨 지적사항(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2000년 6월 일

서산시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서산시의회의원	가	대	현
위 원		모	영	만
위 원		문	종	현
위 원		신	기	원
위 원		정	영	권



결 산 검 사 개 요

1999회계년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1999년도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 법인에 의하여 검사되었으므로 본 결산검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수치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치와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계성으로 인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수치도 검증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중 수행한 내용을 요약하면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이었습니다만, 상기 내용외에 시정 및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로 후술하였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명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세입(B) (B/A)	세출(C) (C/A)	잉여금(D) (B-C)
총계		222,617,647	222,341,415 (99.9)	180,409,610 (81)	41,931,805 (18.8)
일반회계		193,367,416	197,971,890 (102.4)	160,998,120 (83.3)	36,973,770 (19.1)
특별회계	소계	29,250,231	24,369,525 (83.3)	19,411,490 (66.4)	4,958,035 (17)
	상수도사업	7,251,873	7,270,635 (100.3)	6,337,305 (87.4)	933,330 (12.9)
	하수도사업	879,854	981,697 (111.6)	265,045 (30.1)	716,652 (81.5)
	의료보호	2,981,169	2,981,510 (100)	2,975,521 (99.8)	5,989 (0.2)
	모자복지기금	174,012	182,319 (104.8)	40,000 (23)	142,319 (81.8)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43,613	146,407 (101.9)	135,500 (94.4)	10,907 (7.6)
	새마을소득특별지원	589,359	607,716 (103.1)	301,368 (51.1)	306,348 (52)
	구획정리	6,605,532	2,426,442 (36.7)	1,584,385 (24)	842,057 (12.7)
	공영개발사업	140,598	141,001 (100.3)	-	141,001 (100.3)
	주택사업	1,901,477	1,800,032 (94.7)	1,375,410 (72.3)	424,622 (22.3)
	수석농공단지	3,060,914	2,591,786 (84.7)	2,573,632 (84.1)	18,154 (0.6)
	성연농공단지	3,485,630	3,485,463 (100)	3,118,086 (89.5)	367,377 (10.5)
	고북농공단지	967,930	682,266 (70.5)	470,957 (48.7)	211,309 (21.8)
	농촌발전	444,624	429,265 (96.5)	201,988 (45.4)	227,277 (51.1)
주차장운영	623,646	642,986 (103.1)	32,293 (5.2)	610,693 (97.9)	

'99결산 결과 분석

□ 총 관

(단위 : 천원)

회계명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잉여금(D) (B-C)
			세입(B) (B/A)	세출(C) (C/A)	
총계		222,617,647	222,341,415 (99.9)	180,409,610 (81)	41,931,805 (18.8)
일반회계		193,367,416	197,971,890 (102.4)	160,998,120 (83.3)	36,973,770 (19.1)
특별회계		29,250,231	24,369,525 (83.3)	19,411,490 (66.4)	4,958,035 (17)

○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현액 222,617,647천원으로서

- 총 예산현액의 99.9%인 222,341,415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의 81%인 180,409,610천원이 지출됨으로서 세입액의 18.8%인 41,931,80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음.
-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경우 193,367,416천원의 예산현액중 197,971,890천원이 수납되어 160,998,120천원을 지출하고, 36,973,770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29,250,231천원의 예산현액중 24,369,525천원이 수납되어 19,411,490천원을 지출하고 4,958,03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됨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98회계년도 결산시보다 잉여금이 줄었으나, 그래도 수납액 대비 집행실적이 미흡하였음.

□ 세입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정 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결정액(B) (B/A)	실수납액(C) (C/A)	미수납액(D) (B-C)	결손처분	이 월 액
총 계	222,617,647	230,464,197 (103)	222,341,416 (99)	8,122,780 (3)	653,258 (8)	7,469,522 (92)
일반회계	193,367,416	203,303,029 (105)	197,971,890 (102)	5,331,139 (2)	653,258 (12)	4,677,880 (88)
특별회계	29,250,231	27,161,167 (93)	24,369,525 (83)	2,791,641 (10)	0	2,791,641 (100)

-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93,367,416천원보다 9,935,613천원을 초과한 203,303,02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03,303,02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5,331,139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653,25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4,677,880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9,997,115천원보다 2,089,064천원이 적은 27,161,16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4,369,52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791,641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B) (B/A)	지 출 액(C) (C/A)	이 월 액(D) (D/A)	불 용 액(E) (E/A)
총 계	222,617,647	184,201,941 (83)	180,409,610 (81)	25,732,455 (11)	16,475,582 (8)
일반회계	193,367,416	163,332,438 (85)	160,998,120 (83)	23,859,142 (12)	8,510,154 (5)
특별회계	29,250,231	20,869,503 (71)	19,411,490 (67)	1,873,313 (6)	7,965,428 (27)

- 일반회계 예산현액중 163,332,438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중 160,998,12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3,859,142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18,040,056천원, 사고이월 2,334,318천원,
 계속비 3,484,768천원이며, 나머지 8,510,154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중 20,869,503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중 19,411,49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873,313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60,000천원, 사고이월 1,458,013천원, 계속비 355,300천원
 이며, 나머지 7,965,42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이월액분석

(단위 : 천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계	25,732,455	18,100,056	3,792,331	3,840,068
일반회계	23,859,142	18,040,056	2,334,318	3,484,768
특별회계	1,873,313	60,000	1,458,013	355,300

○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25,732,455천원임.

- 일반회계의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간월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 시설계획 수립용역사업의 66건에 18,040,056천원, 사고이월은 해미읍성 정비보수의 20건에 2,334,318천원, 계속비 이월은 서산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1건에 3,484,768천원으로 총 23,859,142천원이 이월되었음.
- 특별회계의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60,000천원, 사고이월은 구획정리특별회계의 1,458,013천원, 계속비이월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355,300천원으로 총 1,873,313천원이 이월되었음.

□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22,341,505	197,971,890	24,369,526
지	방 세	28,730,816	28,730,816	0
세 외 수 입	소 계	91,823,149	70,960,563	20,862,497
	경상적세외수입	19,208,687	13,549,223	5,659,420
	임시적세외수입	72,614,462	57,411,340	15,203,077
지	방 교 부 세	44,494,000	44,494,000	0
지	방 양 여 금	11,179,477	11,179,477	0
보 조 금	소 계	46,114,063	42,607,034	3,507,029
	국 고 보 조 금	25,046,898	22,419,961	2,626,937
	시 · 도비보조금	21,067,165	20,187,073	880,092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80,409,610	160,998,120	19,411,490
인	건 비	19,555,765	18,798,858	756,907
물	건 비	22,042,484	17,701,778	4,340,706
이	전 경 비	22,356,844	19,994,145	2,362,699
자	본 지 출	102,514,754	98,092,240	4,422,514
용	자 및 출 자	1,124,130	0	1,124,130
보	존 재 원	6,841,463	1,363,345	5,478,118
내	부 거 래	4,022,398	3,211,075	811,323
예	비 비 및 기 타	1,951,772	1,836,679	115,093

□ 세입금 불납 결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무 재 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 타
계	653,259	539,356	0	113,709	194
일반회계	653,259	539,356	0	113,709	194
특별회계	0	0	0	0	0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거소불명	무 재 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계	7,469,521	276,975	38,929	807,225	4,263,691	2,082,701
일반회계	4,677,880	275,504	38,929	750,313	3,611,834	1,300
특별회계	2,791,641	1,471	0	56,912	651,857	2,081,401

□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98년말 현재액	'99년도 발생액	'99년도 소멸액	'99년말 현재액
합	계	4,745,540	522,336	1,435,035	3,832,841
일	반 회 계	145,000	0	0	145,000
특 별 회 계	소 계	4,600,540	522,336	1,435,035	3,687,841
	새 마을	585,000	297,000	342,000	540,000
	영 세 민	731,456	209,962	144,572	796,846
	의 료 보 호	1,232	1,372	712	1,892
	주 택	3,282,852	14,002	947,751	2,349,103

□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98년말 현재액	'99년도 발생액	'99년도 소멸액	'99년말 현재액
합	계	53,020,950	1,700,000	10,559,452	43,985,696
일	반 회 계	11,068,604	1,700,000	2,734,378	9,925,077
특 별 회 계	소 계	41,952,346	0	7,825,074	34,060,619
	공 기 업	23,534,285	0	1,725,775	21,812,765
	주 택	2,515,530	0	856,092	1,665,294
회 계	수 석 농 공	8,540,283	0	2,498,370	6,012,856
	성 연 농 공	6,328,852	0	2,314,562	3,979,045
	고 북 농 공	1,033,396	0	430,275	590,659

□ 수지 및 재정력

구분	현년도 (천원)	전년도 (천원)	증감 (천원)	구분	현년도	전년도
세입총액	197,971,890	208,861,283	△10,889,393	자립도	30.68%	35.16%
세출총액	160,991,648	155,336,189	5,645,459	재정력 지수	39.33%	29%
차입잔액	36,980,242	53,525,094	△16,544,852	경상수지 비율	43.82%	41.56%
조상총용 총당금				세입세출 총당비율	102.99%	105.97%
잉영금사용 채무상환액				지방채 상환비율	9.62%	9.69%
실질수지	36,980,242	53,525,094	△16,544,852	재정계획 운영비율	101.53%	111.47%
1인당 재정규모	1,066	1,030	36	세입예산 반영비율	100.17%	100.42%
1인당 세부담액	1,311	1,385	△74	투자비 율	70.03%	71.39%
채무현재액	6,257,620	8,470,965	△2,213,345	자체수입 증감율	105.38%	96.64%
적립금총액	439,835	250,748	189,087	경상경비 증감율	94.81%	90.9%

검사결과지적사항

1. 불용액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9		1998	
	예산현액	불 용 액	예산현액	불 용 액
계	222,617,647	16,475,581	235,330,581	17,661,668
일반회계	193,367,416	8,510,153	206,333,466	12,045,951
특별회계	29,250,231	7,965,428	28,997,115	5,615,717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99회계년도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6,475,581천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98회계년도 결산액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그래도 불용액이 과다함.

○ 조치의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잔액은 추경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조치를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세항	세세항	목	세목			
합 계				19,957	0	19,957
보건위생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400	0	400
환경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240	0	240
사회복지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재료비	1,800	0	1,800
"	"	"	일시사역인부임	500	0	500
"	자체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3,003	0	3,003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300	0	300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2,000	0	2,000
"	"	"	기타보상금	600	0	600
농업기반조성	"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800	0	800
해양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7,500	0	7,500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재료비	454	0	454
"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160	0	1,160
산림관리	"	"	민간실비보상금	1,000	0	1,000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200	0	200

예산편성후 사업의 취소 또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한 금액이 14건에 19,957천원이 발생되므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 조치의견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추경시 감액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해야할 것임.

3. 구획정리특별회계 결산의 부적정 및 재정관리 미흡

○ 현 황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고
3,902,307	0	3,902,307	2,422,144	2,426,44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783,603	2,703,225	5,486,828	3,042,398	1,584,385	1,458,013	2,444,429

세입세출결산에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전년도 이월액을 누락시켜 편성하지 않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상위하고 재정관리에 있어 1999회계에서 2000회계로 이월하는 과정에서 자금없는 이월금 1,458,013천원이 발생하였음.

○ 조치의견

세입세출결산시 자금이 없더라도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은 일치토록 하여야 하며, 자금없는 이월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정리 추정시 일부라도 반영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바람직함.

4.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장	관	항	목				
지방세	지방세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680,000	3,287,009	699,712	2,587,297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	"	110,000	1,103,406	148,355	955,051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과목과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과목의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과소 계상됨으로서 각종 사업계획 등에 차질을 가져올수 있음.

○ 조치의견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과소 계상되어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5.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 현 황

〈반환금 내역〉

(단위 : 천원)

계	국 비	도 비
1,349,075	562,984	786,091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1,349,075천원의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 처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 조치의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6. 자동차세 부과 부적정

○ 현 황

〈서산경찰서 차량보유현황〉

(단위 : 대)

차종별 계	일반업무용			경비직전용	수송용	형사순찰	112순찰	교통순찰
	승용	화물	승합					
43	4	1	1	3	2	3	24	5

자동차세 비과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호, 경비, 교통순찰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비과세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경찰서 보유차량중 별도의 표식이 없는 일반업무용 차량 6대를 비과세 처리하였음.

○ 조치의견

관계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과세대상 차량이 비과세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7. 시장 사용료 체납자 관리 부실

○ 현 황

(단위 : 천원)

장옥번호	성 명	주 소	체 납 월	체납금액	수 납 일
계				1,862,460	
A-18	박동호	읍내동 624-5	12	66,230	
A-28	전극영	동문동 903	1,2,3,4,5,7,8,11,12	883,200	
A-32	최연용	동문동 860-6	11	132,480	
A-57	이정순	동문동 283-2	6,8,10	132,480	2000.3.31
A-104	박병관	잠흥동 628	8	44,160	2000.3.31
A-121	가태현	동문동 904-1	1,2,9	132,480	
A-126	이영춘	동문동 864-2	1,4,5	331,200	
A-152	김진순	동문동 895-5	12	66,230	2000.3.31
B-2	이병례	동문동 684-6	9	74,000	

시장 사용료 납부계약에 의해 임대한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기간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사용료가 일실될 우려가 있음.

○ 조치의견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체납이 발생될 경우 체납처분을 실시하는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8.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액 관리 미흡

○ 현 황

〈결손처분내역〉

(단위 : 천원)

계		무 재 산		소 멸 시 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791	638,173	631	551,042	1,160	86,131

〈연도별 체납액 내역〉

(단위 : 천원)

년 도 별	체 납 건 수	체 납 액	비 고
계	27,998	5,986,782	2000.5.1, 현재
1990년	3	481	
1991년	32	12,202	
1992년	68	30,963	
1993년	259	59,470	
1994년	500	66,135	
1995년	1,610	296,662	
1996년	2,460	230,720	
1997년	3,518	853,616	
1998년	5,565	1,547,494	
1999년	9,561	2,338,976	
2000년	4,422	550,063	

1999년도 결손처분금액은 1,791건에 638,173천원을 무재산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음. 무재산의 경우 금융조회등 타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손처분한 것은 적정하나 별도의 조치없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은 부적정하며, 연도별 체납액 27,998건에 5,986,782천원을 기 압류조치를 하여 채권 확보를 하였으나, '90~'94년도 발생한 862건에 169,251천원은 채권 확보후 장기간 방치하였음.

○ 조처의견

채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부득히 채납자가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 타 재산 소유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고, 채권확보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채납액은 빠른 시일내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임.

9. 각종 기금관리 부실

○ 현 황

- 노인복지기금 : 기금을 각 통장별로 나누어 관리 운영하고 일제표를 취합하여 계산하다 보니 통합전 액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12월 31일자로 통장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생활보호적립기금 : 조례에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일정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 제정 이후 기금이 적립되지 못하였고, 기금 관련 통장들이 12월 31일자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결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 '99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신청에 따른 「기업체 종합평가표」 상 점수 기입에 오기가 있으며, 기업체 종합평가표에 나타난 자금 필요성 판단과 관련하여 자기 자본 조달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신청자가 작성한 내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재난관리기금 : '99년도 기금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집행내역이 없으며 12월 31일자로 통장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재해대책기금 : '99년도 기금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기금운영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으며, 12월 31일자로 통장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조치의견

- 노인복지기금 : 기금관련 통장을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12월 31일자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산해야 할 것임.
- 생활보호적립기금 : 기금 설치조례의 준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폐지 또는 규정에 맞도록 기금을 적립해야 하고, 12월 31일자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산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 점수오기가 전체 순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실수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히 산정해야하고, 자기자본 조달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재난관리기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금의 다소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12월 31일자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산해야 할 것임.
- 재해대책기금 :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기금운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금 관련 통장을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12월 31일자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산해야 할 것임.

10. 공유재산의 임대료등 체납관리 미흡

○ 현 황

〈공유재산 대부〉

(단위 : 천원)

구 분	필 지 수	면적(㎡)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납 액
계	190	851,898	286,969	274,216	12,753
도 유	76	108,478	15,528	15,464	64
시 유	114	743,420	271,441	258,752	12,689

〈국유재산 매각〉

(단위 : 천원)

필지수	면적(㎡)	매각대금세입구분	매각금액	수 납 액	미수납액
43	25,132	계	421,840	413,335	8,505
		국 세 입	344,942	339,273	5,669
		도 세 입	15,016	14,855	161
		시 세 입	61,882	59,207	2,675

〈국유재산 임대〉

(단위 : 천원)

필지수	면적(㎡)	대부료세입구분	대부료징수결정금액	수 납 액	미수납액
1,599	1,478,290	계	100,214	73,781	26,433
		국 세 입	70,147	51,465	18,682
		시 세 입	30,067	22,316	7,751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와 관련하여 고질적인 체납자나 미납자에 대한 수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음.

○ 조치의견

미수납자를 사유별로 분류하여 사유가 불량할 경우에는 특별관리하여 세수 확보를 위해 강제조치를하여 재정확보는 물론 건전한 납세의무를 확립해야 하고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서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11.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합

○ 현 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지원단체수	지원금액	비 고
합 계	58	182,050	
문화공보담당관실	19	42,450	
자치 행정 과	10	56,000	
사회 여성 복지과	15	33,400	
지역 경제 과	1	9,200	
환경 보호 과	2	6,600	
민방위재난관리과	3	5,400	
세 무 과	1	3,000	
농 립 과	4	20,000	
농업 기술 센터	3	6,000	

관련 조례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 우려가 있고 친목단체와 유사한 단체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므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치의견

임의단체의 무분별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를 최소한의 공익성을 가진 단체로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12. 채권.채무 결산 부실

○ 현 황

〈농공단지관련 채권액〉

(단위 : 천원)

계	수석농공단지	성연농공단지	고북농공단지
8,845,174	5,169,185	2,959,427	716,562

〈주택자금 채무〉

(단위 : 천원)

구 분	계	원 금	이 자
결산서상 금액	1,665,294	1,379,493	285,801
실제관리대장상 금액	1,832,664	1,451,797	380,867
차 액	△ 167,370	△ 72,304	△ 95,066

농공단지관련 채권액 8,845,175천원을 결산서에 전액 누락시켰으며, 주택자금 특별회계 채무결산은 결산서상 채무액이 제출서류와 비교할 때, 167,370천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주택은행의 잔고증명이 1999년 12월 31일자이어야 하나, 2000년 6월 2일 현재 잔고증명이어서 그동안의 상환액 및 이자가 채무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 채무 누락금액은 더욱 커질 것임.

○ 조치의견

채권.채무 결산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13. 기타 지적사항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50/100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면적은 허가 면적이거나 건축물 면적이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 면적을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음.
(현황 별첨 1)
앞으로, 사실상 현황에 의한 면적을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고 현황 면적과 허가면적이 상이한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재를 하여야 할 것임.
- 도로 점용료 미수납액의 결산서상 금액과 실제 미수납액과의 차이가 나며 현년도 수납액을 차년도 수납으로 이월시킨 경우가 있는바 적은 금액일지라도 누락 또는 착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임.
- 세외수입 체납액 591,842천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상태로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지방세법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해야하나 압류등 채권확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18,371천원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으로 더 이상 징수 할수 없는 상태인데도 차기년도로 이월시키고 차기년도에서 다수 징수 결정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전에 적극적인 채권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99년도 공동묘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년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으로 행정의 예측성과 안정성 확보가 요구됨. 특히, 공동묘지내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등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제기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독촉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료에 대하여 압류등 별도의 채권 확보 조치가 미흡하여 채권이 일실된 상태임. 따라서, 장기체납자는 재산 조회를하여 포착된 재산에 압류를 해야함. 공유재산 임대료중 체납액 징수시 년 15%의 가산금을 일할계산하여 징수해야 하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현황 별첨 2, 3)

-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의 납부의무가 소멸되기전에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압류 등의 채권 확보 조치가 필요하며 '97년에 부과한 1,749,600원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원인행위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임.

【별첨 1】

유 흥 주 점 현 황

(단위 : m²)

일련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허가면적	과세면적	건축면적
1	카사블랑카	서산시 읍내동 145-1	120.0	200.90	200.90
2	일출봉수카바레	서산시 동문동 902-4	407.45	407.45	733.89
3	백야룸가요주점	대산읍 대산리 214-10	143.40	157.87	157.87
4	허심청	서산시 읍내동 144-1	427.48	475.63	475.63
5	신황제가요주점	서산시 읍내동 147-3	157.80	158.68	158.68
6	황하	서산시 읍내동 102-9	125.90	165.26	776.61
7	대가	서산시 읍내동 237-1	266.20	266.26	266.26
8	하이웨이	서산시 읍내동 101-1	344.00	353.61	353.61
9	두꺼비룸싸롱	서산시 동문동 888-13	425.52	868.92	868.92
10	가로나	서산시 읍내동 102-47	125.00	125.42	125.42
11	룩소르	서산시 읍내동 112-1	443.60	550.38	691.45
12	대가	대산읍 대산리 223-50	74.00	74.68	74.68
13	코리아나	대산읍 대산리 223-5	145.90	225.17	268.97
14	비즈니스클럽	서산시 동문동 421-6	131.87	131.87	294.98
15	보문	서산시 읍내동 91-18	299.43	299.43	299.43
16	아마존	서산시 동문동 898-10	159.54	159.54	159.54
17	대궁	서산시 동문동 890-19	159.02	159.02	159.02
18	씨티룸유흥주점	서산시 읍내동 144-1	245.29	325.05	325.05
19	코리아	해미면 읍내리 208-1	220.54	235.62	235.62
20	귀빈	대산읍 대산리 113-1	268.58	268.58	268.58
21	똥쌈피	서산시 읍내동 144-1	120.69	136.59	136.59
22	유토피아	서산시 읍내동 154-1	158.62	158.62	158.62
23	유정룸비즈니스	대산읍 대산리 242	265.85	265.85	265.85
24	호박	서산시 동문동 902-8	197.76	197.76	197.76
25	이화	서산시 동문동 227-2	159.65	159.65	159.65

[별첨 2]

'94년이전 공유재산대부료 체납현황

년도별	납 부 자		재 산 표 시				부과액(원)	납 기
	주 소	성 명	동	지번	지목	지적(㎡)		
계	8건						2,265,560	
1991	동문동 1027	정헌열	동문	266-1	대	199중69	259,040	'91.5.14
1992	"	"	"	266-1	"	"	299,700	'92.5.19
1993	"	"	"	266-1	"	"	349,630	'93.1.31
	석남동 7-8	김문응	"	999-62	"	60	180,000	'93.6.19
	"	"	"	999-2	"	76	285,100	"
1994	"	"	"	999-62	"	60	208,500	'94.2.28
	"	"	"	999-2	"	76	326,520	"
	동문동 1027	정헌열	"	266-1	"	69	357,070	"

【별첨 3】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연도별 구 분	총 계	94년도	93년도	92년도	91년도
건 수	15	4	5	5	1
체 납 액	10,508,290	4,084,540	1,371,580	4,309,670	742,500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처 리 부 서	비 고
1	불용액 과다발생	기획감사담당관실	결산검사 의견서 P13
2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	" P14
3	구획정리특별회계 결산의 부적정 및 재정관리 미흡	도 시 건 축 과	" P15
4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세 무 과	" P16
5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기획감사담당관실	" P17
6	자동차세 부과 부적정	세 무 과	" P18
7	시장사용료 체납자 관리부실	지 역 경 제 과	" P19
8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액 관리미흡	세 무 과	" P20
9	각종 기금관리 부실 - 노인복지기금 - 생활보호적립기금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 재난관리기금 - 재해대책기금	사 회 여 성 복 지 과 지 역 경 제 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P22
10	공유재산의 임대료등 체납 관리미흡	회 계 과	" P24
11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합	기획감사담당관실	" P25
12	채권·채무 결산부실 - 채 권 - 채 무	세 무 과 기획감사담당관실	" P26
13	기타 지적사항 - 재산세 부과사항 - 도로 점용료사항 - 세외수입 징수사항 - 공동묘지 운영관련 - 국·공유재산 임대료 사항 -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세 무 과 건 설 과 세 무 과 사 회 여 성 복 지 과 회 계 과 농 립 과	" P27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	불용액 과다 발생	<p>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p> <p>'99회계년도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6,475,581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음.</p> <p>이는 '98회계년도 결산액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그래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었음.</p>	<p>'99년도는 '98년보다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 세입기반의 약화로 지방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되었음. 따라서 경상예산 긴축운영을 위해서 '98년도 수준으로 예산결감을 하였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체도록 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앞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편성 및 과다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음.</p>	<p>기획감사 담당관실</p>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2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예산편성후 사업의 취소 또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한 금액이 14건에 19,957천원이 발생되므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예산편성후 예기치 못한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앞으로는 관련 실과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기획감사 담당관실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3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구획정리 특별회계결산의 부적정 및 재정관리 미흡	세입세출결산시 자금이 없는 이월액을 세입예산에 누락한바 차후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도 시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4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과목과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과목의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과소 계상 됨으로서 각종 사업계획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세외수입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5	국·도비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적정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1,349,075천원의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 처리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음.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은 최대한 보조금액에 맞추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공교롭게도 하수종말처리장등이 마무리가 되어 예상외로 국도비 사용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앞으로는 각실과, 사업소등 국·도비 관련 사업추진 부서로 하여금 보조금사용 잔액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기획감사 담당관실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6	자동차세 부과 부적정	자동차세 비과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호·정비·교통순찰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비과세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경찰서 보유 차량중 별도의 표식이 없는 일반업무용 차량 6대를 비과세 처리 하였음.	관계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과세대상 차량이 비과세 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 조치 하였음. - 조치실적 - · 서산경찰서장차 외 4대 부과	세 무 과	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차량번호</th> <th>배기량</th> <th>세 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호5263</td> <td>1,796</td> <td>179,600</td> <td></td> </tr> <tr> <td>35마8580</td> <td>1,349</td> <td>94,430</td> <td>관용차는</td> </tr> <tr> <td>1호2949</td> <td>1,329</td> <td>92,610</td> <td>교 육 세</td> </tr> <tr> <td>35라7679</td> <td>1,341</td> <td>93,870</td> <td>면 제</td> </tr> <tr> <td>82노5320</td> <td>화물차 (5.2톤)</td> <td>15,930</td> <td></td> </tr> <tr> <td>계</td> <td>5건</td> <td>476,440</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승합차 충남72고3530호는 교통 순찰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비과세처리</p>						차량번호	배기량	세 액	비 고	1호5263	1,796	179,600		35마8580	1,349	94,430	관용차는	1호2949	1,329	92,610	교 육 세	35라7679	1,341	93,870	면 제	82노5320	화물차 (5.2톤)	15,930		계	5건	476,440	
차량번호	배기량	세 액	비 고																														
1호5263	1,796	179,600																															
35마8580	1,349	94,430	관용차는																														
1호2949	1,329	92,610	교 육 세																														
35라7679	1,341	93,870	면 제																														
82노5320	화물차 (5.2톤)	15,930																															
계	5건	476,440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
7	시장사용료 체납자 관리부실	시장 사용료 납부계약에 의해 임대한 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기간 납부하지 않은 장육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사용료가 일실될 우려가 있음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방송등을 통하여 납기내 납부토록 하겠으며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실시, 채권을 확보하여 시장사용료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지역경제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8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액 관리 미흡	1999년도 결손처분 금액은 1,791건에 638,173천원을 무재산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음. 무재산의 경우 금융조회 등 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손처분 한 것은 적정하나 별도의 조치없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한 것은 부적정하며, 연도별 체납액 27,998건에 5,986,782천원을 기 압류조치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90~'94년도 발생한 862건에 169,251천원은 채권확보 후 장기간 방치하였음.	정당하게 과세된 지방세는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부득이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전에 타 재산 소유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처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채권확보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체납액은 조속한 시일내 공매처분 등의 조세환가로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것임.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결과
9	각종 기금관리 부실 - 노인복지기금 - 생활보호회적립기금	노인복지기금 - 기금을 각 통장별로 나누어 관리 운영하고 일계표를 취합하여 계산하다보니 통합전 액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12월 31일차로 통장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통합 일계표에 따른 장부정리로 액수산정 어려움 - 노인복지기금을 연도별로 적립함에 따라 여러개의 구좌로 관리하고 있고 구좌별로 예치이자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음. - 시 금고에서 의 일계표 작성시 이자발생액을 통합정리하여 통보하고 있어 기금의 현금출납부에도 구좌별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정리 하고있었음. ⇒ 시 금고에서는 일계표의 분리작성 및 출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나 구좌별 이자발생 내역을 제출받아 기금의 현금출납부를 분리작성 하겠음.	사회여성 복지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p>생활보호적립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에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일정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 제정 이후 기금이 적립되지 못하였고 기금관련 통장들이 12월 31일자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결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 	<p>12월 31일자 통장의 미정리 - 노인복지기금은 정기예탁금으로 통장에 이자발생액이 가입되는 경우는 기간만료, 또는 통장해지, 이자출금할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인체됨. ⇒ 기간 만료전 통장정리는 불가능하므로 2000년도 기금결산시부터는 12월 31일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토록 조치하겠음.</p> <p>조례에 의한 계속적인 기금의 미적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5. 3. 8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적립하여 왔음. 	<p>사회여성 부 지 과</p>	<p>여</p>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p>- 생활보호법시행령의 개정(1998. 7. 28)에 따라 생활보호기금의 적립은 시·도(광역자치단체)에 한하고 있어 시(자치단체)에는 적립의 필요성이 없음. ⇒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을 환원조치 하겠음.</p>	<p>사 회 여 성 부 지 과</p>	<p>여</p>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9	<p>각종 기금관리 부실</p> <p>-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p>	<p>'99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신청에 따른 「기업체 종합 평가표」 상 점수 기입에 오기가 있으며 기업체 종합평가표에 나타난 자금 필요성 판단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조달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청자가 작성한 내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p>	<p>「기업체 종합 평가표」 점수오기</p> <p>'99 제1차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 심의 시 (주)그린에 대한 기업체 종합 평가표 9항목의 자금 필요성 인정 기업 부분에 대하여는 2순위 평점 5점을 산정 한후 평가표 작성시 오타로 인하여 순위 부분을 3순위로 표기하였으나 점수는 2순위 5점으로 배정한 바, 점수의 오기가 아닌 오타였음.</p> <p>앞으로 조그마한 오타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음.</p> <p>· 기업체 종합 평가표 별첨</p>	지역경제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p>- 자금 필요성 판단 : 불임 자기자본 조달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모색</p> <p>- 사신시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기업체의 종합평가 항목 9의 자금의 필요성 항목은 면담등을 통하여 신청 기업체의 자금의 시급성등을 평가 하도록 한 취지이나 면담, 작성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경향이 있어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자금의 지원 효과를 달성하고자 신청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내역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p>	지역경제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p>- 앞으로 본 항목 평가시 자기자본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중빙 서류를 갖추도록 하겠음.</p>	지역경제과	여

기업체 종합평가표(경영안정자금)

업체명(대표자)	(주)그린 김 진 학		
소재지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486		
기업구분	일반기업	신청금액	200백만원

평 점	57점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별표 1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내 역	평 점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 ○ 종업원 100인이상	20	(152명 + 153명 + 153명) ÷ 3 = 153명	20
3. 품질관리 우수 및 도정시책 참여 ○ ISO 인증기업 ○ 2년이내 구조조정자금지원	15점 7 5	이내에서 합산 인증번호KQA-97209(ISO9002) (한국품질보증원) '98 상반기구조조정자금지원	12
7. 생산성 향상 ○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15	연간매출액 11,313백만원	15
8. 재무상태 ○ 자기자본비율 30%이상	5	$\frac{\text{자본 } 1,825\text{백만원}}{\text{자산 } 4,964\text{백만원}} \times 100 = 36.7\%$	5
9. 자금 필요 인정기업 ○ 3순위	1	<사업계획 및 자금신청시 면답에 의거>	5

자금필요성판단(평가표제9항)

【일반중소기업】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총소요 자금(A)	자기자본 조달액(B)	비 율 (B/A)	순 위	평 점	비 고
7업체	1,817	787	40.19			
(주) 그 린	462	262	56.71	2	5	
동양수처리공업(주)	194	134	69.70	1	5	
대 호 산 업 (주)	200	0	0	7	1	
(주) 한국포조텍	220	50	22.73	6	1	
삼안기술개발(주)	200	100	50.00	3	5	
(합) 연 합 공 사	391	191	48.85	4	3	
부국식품 공업사	150	50	33.33	5	3	

【영세기업】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총소요자 금(A)	자기본 조달액(B)	비 율 (B/A)	순 위	평 점	비 고
3업체	180	55	31.55			
서 산 식 품	40	15	37.50	1	5	
인 정 정 미 소	70	20	28.57	2	3	
후 생 정 미 소	70	20	28.57	2	3	

※제9항 자금필요인정기업의 사정기준은 사업계획서상 소요자금중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신청기업에 대하여 기업구분별 4:3:3의 비율로 5,3,1점으로 산정함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9	각종 기금관리 부실 - 재난관리기금 - 재해대책기금	- 재난관리기금 : '99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집행 내역이 없으며, 12월 31일자로 통장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재난관리기금 :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금의 회계연도 마감시 매년 통장정리 및 연말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음.	민 방 위 재 난 관 리 과	여
		- 재해대책기금 : '99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기금운영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으며, 12월 31일자로 통장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재해대책기금 : 2000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법규 및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앞으로 매년 통장정리 및 연말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0	공유재산의 임대료등 체납관리 미흡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와 관련하여 고질적인 체납자나 미납자에 대한 수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음. - 대부료 체납현황 · 시유 : 12,689천원 · 도유 : 64천원 · 국유 : 26,433천원 · 계 : 39,186천원 - 매각대금 체납현황 · 국유 : 8,505천원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 재산압류 : 13건 - 재산조회중 : 189건 - 독촉장 발부 : 240건 상반기중 추진계획 - 독촉장 일체발부 - 자진정수 납부 독려 - 체납자 대부계약 해지 - 매각대금 체납자 계약 해지	회계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1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합	관련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 우려가 있고 친목단체와 유사한 단체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동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 신청계획서를 받아 엄격하게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관련법에 의거 신중하게 지원검토하고 또한 수시로 관련 실과, 사업소에 정확한 집행을 위해 보조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하여 공익상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관련 조례 정비는 상위법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정비 여부를 검토 하겠음.	기획감사 담당관실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2	채권·채무 결산 부실	<p>농공단지 관련 채권액 8,845,175천원을 결산서에 전액 누락시켰고, 주택자금 특별회계 채무결산은 결산서상 채무액이 제출서류와 비교할 때 167,370천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주택은행의 잔고증명이 '99. 12. 31자 이어야 하나 2000. 6. 2 현재 잔고증명 이어서 그동안의 상환액 및 이자가 채무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 채무누락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임.</p>	<p>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입주업체의 분양금액 8,845,175천원에 대하여 채권으로서 결산시 누락되었기, 향후 농공단지업체 분양금액에 대하여 채권으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결산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p>	<p>기획감사 담당관실</p> <p>세 무 과</p>	<p>여</p> <p>여</p>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3	기 타 지적 사항 (고급오락용 건축물에 대한 과세면적 부조정)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50/100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면적은 허가면적이거나 건축물 면적이 아닌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 면적을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음.	앞으로 사실상 사용면적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실상 사용면적에 대하여 과세하겠음.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3	도로 접용료 사항	도로접용료 미수납액의 결산서상 금액과 실제 미수납액과의 차이가 나며, 현년도 수납액을 차년도 수납으로 이월시킨 경우가 있는 바 적은 금액일지라도 누락 또는 착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결산서상 금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는 수납액 통지의 미통보로 누락되었는 바 이는 누락분 조정으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누락 및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건 설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3	기 타 지적 사항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소환)	세외수입 체납액 591,842천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상태로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지방세법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나 압류등 채권확보 조치가 되어있는 않은 18,371천원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차기연도로 이월시키고 차기연도에서 다시 징수결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전에 적극적인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 관련업무는 관련 실과 소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주지 하였음.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3	공동묘지 운영관련	<p>'99년도 공동묘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따른 집행으로 행정의 예측성과 안전성 확보가 요구됨. - 특히 공동묘지내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등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제기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p>읍·면·동의 조사 및 200년도 예산편성후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 정비대상 공동묘지 조사지시 : '99. 6. 25 - 정비대상지현지조사실시 : '99. 9. 1 - 사업대상지확정 및 예산반영 : '99. 9. 29 <p>※ 예산반영 및 추진사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산갈산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 · 인지공원묘지 주변 소하천 정비공사 · 공동묘지 안내표지판 설치 · 공동묘지 잡목제거 <p>⇒공동묘지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묘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p>	사회여성 복지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3	공유재산의 임대료등 체납관리 미흡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와 관련하여 고질적인 체납자나 미납자에 대한 수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음. - 대부료 체납현황 · 시유 : 12,689천원 · 도유 : 64천원 · 국유 : 26,433천원 · 계 : 39,186천원 - 매각대금 체납현황 · 국유 : 8,505천원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 재산압류 : 13건 - 재산조회증 : 189건 - 독촉장 발부 : 240건 상반기중 추진계획 - 독촉장 일제발부 - 자진정수 납부 독려 - 체납자 대부계약 해지 - 매각대금 체납자 계약 해지	회 계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13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납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채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국세기본법의 납부무기가 소멸되기전에 채권이 상실하지 않도록 압류등의 채권확보 조치가 필요하며 '97년에 부과결정된 1,749,600원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원인행위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임.	농지조성비는 시장에게 전용부담금은 농업기반공사에 징수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채권확보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97년 부과된 1,749,600원은 농림부장관에게 부과결정 철회 승인요청 할 계획임.	농 립 과	여